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 걱정말아요이통합종신보험 (저해지환급형) 1904	1종 (50% 선지급형)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기본형
	2종 (80% 선지급형)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기본형

다만, ‘기본형’의 경우 보험종목의 명칭을 “무배당 걱정말아요이통합종신보험 1904”로 한다. 또한 보험종목의 명칭에 판매경로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종 (50% 선지급형)	2종 (80% 선지급형)	
종신	5년납*	만 15세 ~ 66세	만 15세 ~ 63세	월납
	7년납	만 15세 ~ 63세	만 15세 ~ 61세	
	10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57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3세	
	20년납	만 15세 ~ 51세	만 15세 ~ 49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47세	
	75세납	만 15세 ~ 43세	만 15세 ~ 38세	
80세납	만 15세 ~ 36세	만 15세 ~ 31세		

\* 다만, 5년납의 경우 ‘30%저해지환급형’ 및 ‘기본형’에 대하여 가입 가능함.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의무부가 특약의 종류 :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나. 의무부가방법 및 부가한도

: 특약 가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부가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의 영업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5.0%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3. 저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은 「저해지환급금」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CI/LTC 보험금 발생 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나. ‘가’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CI/LTC보험금 발생 전)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30% 저해지환급형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30%
50% 저해지환급형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하다.

#### 14.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이하 “생활설계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하며, 생활설계자금 신청내역 및 보험금 변경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 ‘가’의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1회 지급하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설계자금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라. 생활설계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정액 지급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정액의 생활설계자금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

② 정액 감액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생활설

계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2)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의 신청일을 포함하여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월의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한다.
- (3)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생활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생활설계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의 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생활설계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바.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 15.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나’ 항과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가’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린다.

## 다.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는다.

## 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적용함
- (2)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음

## 16. 기타

### 가.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일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2)’ 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다.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에 관한 사항**

- (1)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에 대하여 국내의 경험통계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산출하며 신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 (2)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 재산출로 인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 기산출된 위험률의 안전할증비율에 해당하는 기존계약의 과거 납입보험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으로 환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바.**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저해지환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예시 기준 : 1종(50% 선지급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저해지환급형		기본형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120,500	128,500	147,000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만원)

경과 기간	저해지환급형				기본형	
	30% 저해지환급형		50% 저해지환급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0	0.0%	0	0.0%	0	0.0%
3년	84	19.4%	140	30.3%	280	53.0%
5년	180	24.9%	301	39.0%	601	68.2%
10년	411	28.4%	685	44.4%	1,371	77.7%
20년	3,068	106.1%	3,068	99.5%	3,068	87.0%
30년	3,630	125.5%	3,630	117.7%	3,630	102.9%
50년	4,542	157.0%	4,542	147.3%	4,542	128.7%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실제 가입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예시됩니다.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설명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본형’ 대비 50%인

‘50% 저해지환급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다만, ‘30% 저해지환급형’ 및 ‘50% 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기본형’과 동일하며, 환급률은 ‘기본형’보다 높습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설계사 : \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는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_\_\_\_\_ (인/서명)

친권자 : \_\_\_\_\_ (인/서명)

친권자 : \_\_\_\_\_ (인/서명)